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1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허종식·박찬대·어기구

유동수 · 김성주 · 홍영표

배준영 • 최종유 • 정일영

신동근 · 강병원 · 송영길

김정호 · 김영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와 같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1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최근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시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법인·단체·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 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국민을 감염병 전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1항 제2호, 제18조의4제2항 및 제79조의2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질병대응센터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 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법인 ·단체·개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9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법인·단체·개인 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
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 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	
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2. 국립검역소</u>	<u>2. 질병대응센터</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
	사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
	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구를 받은 법인·단체·개인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u>따라야 한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u>④</u> 제1항 및 제2항
및 <u>제2항</u> 에 따른 지원 요청 등	제3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 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4.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
<u>제3항</u>
제79조의2(벌칙)
1.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
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 · 방해 · 회피하거
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
은폐한 법인 • 단체 • 개인 등
<u>2.</u> ∼ <u>5.</u>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